은행법상의 은행 비밀유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성문법의 전통

싱가포르의 은행 비밀유지는 성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은행법(Banking Act)은 1962년 처음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통화 도입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1970년 법률 제41호로 비로소 제정되었고, 1971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1] 2001년 이전의 구 section 47(1)은 주로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개별 고객의 사정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2] 보통법(common law)은 영국 항소법원이 *Tournier v National Provincial and Union Bank of England* [1924] 1 KB 461 사건에서 정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001년까지는 이 두 법원(法源)이 나란히 존재했습니다.

정부는 비밀유지를 금융중심지의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정부는 은행 비밀유지 규정에 관한 의회 성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엄격한 은행 비밀유지는 우리 은행 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3][4] 이 문장은 2000년대의 공식 입장을 요약합니다. 비밀유지는 예금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지탱하므로 공공재였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민간의 부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기로 한 시기에 비밀유지는 경쟁력 있는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001년 section 47의 재입법

2001년 정부는 법령을 재검토하여 section 47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2001년 은행(개정)법(Banking (Amendment) Act 2001, 2001년 법률 제23호)은 구 조항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3부칙(Third Schedule)과 함께 새 조항을 제정했습니다.[56] 현행 section 47(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싱가포르 소재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은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새 조항의 구조는 독특했습니다. 제2항은 제3부칙 제1열에 열거된 목적을 위해서만, 제2열에 열거된 사람에게, 제3열의 조건에 따라 공개를 허용합니다.[7] 부칙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Part 1은 공개 이후의 추가 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서면 허락에 의한 공개, 유언검인·파산·청산과 관련된 공개, 은행과 고객 사이의 소송에서의 공개, 채권압류명령(garnishee order)에 따른 공개, 증거법(Evidence Act)의 은행장부 규정에 따른 공개, 그리고 성문법상 범죄의 수사나 기소를 위한 공개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2부는 공개를 받은 자 자신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은행의 임직원, 감사인, 전문 자문가에 대한 공개가 그 예입니다.

외국 은행 본점의 감독기관은 특별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외국 은행의 모국 감독당국에 대한 공개는 그 요청에 응하기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예금 정보는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영업을 확장하던 스위스와 유럽 은행들에게 이는 아시아 고객의 예금 정보가 본국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벌칙과 소송절차의 보호

벌칙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section 47(1) 또는 (5)를 위반한 자는 유죄 판결 시 개인의 경우 12만 5,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벌금은 25만 싱가포르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8] 도산절차나 은행과 고객 사이의 소송에서 고객 정보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여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이며, 최고 12만 5,000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ection 47(8)은 프라이빗 뱅크에게 특히 흥미로운 요소를 더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은행이 고객과 이 법이 정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비밀유지에 관해 명시적 합의를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9] section 47(9)는 MAS가 검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 중 감독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고객을 은행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그리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감독기관으로부터도 보호했습니다.

확인된 망라적 체계

재입법은 *Tournier* 사건에서 인정된 보통법상의 예외가 여전히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항소법원은 2009년 2월 27일 선고된 *Susilawati v American Express Bank Ltd* 사건에서 이에 답했습니다. 법원은 section 47이 싱가포르의 은행 비밀유지를 규율하는 배타적 체계이며, 이 법률 체계에는 보통법상의 네 가지 일반적 예외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10] 이 판결은 [2009] 2 SLR(R) 737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논자들은 법원이 은행의 계약상 의무와 법률상 의무를 혼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다른 논자들은 이 결론이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언의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실무상의 효과는 폐쇄적 목록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은행은 제3부칙의 관문 중 하나를 통해서만 고객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전에 정보를 구하는 사기 피해자들은 증거법에 따른 은행장부 신청이 실무상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경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1] 자산관리 중심지로서 폐쇄적 목록은 고객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채권자와 외국 청구인이 쓸 수 있는 수단을 제한했으며, 이 긴장은 외국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심해졌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비밀유지와 범죄

정부는 비밀유지가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제3부칙 Part 1 제5항은 범죄의 수사나 기소에서 성문법에 따른 명령이나 요청에 응하기 위한 공개, 그리고 범죄에 관한 고소나 신고를 위한 공개를 허용합니다.[12] 형사사법공조법(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은 싱가포르가 외국의 형사 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외국에서의 조세 포탈은 이 10년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이러한 관문을 작동시키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조세조약은 제한된 경우에만 은행 정보의 교환을 허용했습니다. 2010년 MAS의 한 대변인은 이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은행 비밀유지 규정은 '범죄나 수사가 관련된 경우 외국 당국에 은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당한 투자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13]

전환점은 2009년에 찾아왔습니다. 재무부는 스위스 연방평의회가 같은 조치를 취하기 6일 전인 2009년 3월 7일자 보도자료에서 싱가포르가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기준이 '범죄자를 비호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은행 비밀유지 제도와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14] 그럼에도 OECD는 2009년 4월 초 싱가포르를 이 기준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하지는 않은 국가 목록에 올렸습니다.[15] 그 뒤에 이어진 입법 개정과 이후의 자동정보교환으로의 이행은 제E편 제II장에서 다룹니다.

흔한 오해

싱가포르가 스위스의 은행 비밀유지를 그대로 베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두 제도는 형사 제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그러나 그 구조는 결정적인 측면에서 다릅니다. 스위스 은행법 제47조는 사법(私法)과 인격권 보호에 의해 그 내용이 정해지는 직업상 비밀의 침해를 처벌합니다. 싱가포르 은행법 section 47은 허용되는 공개를 스스로 정의하며, 이를 제3부칙의 폐쇄적 목록으로 규정합니다. *Susilawati* 판결 이후에는 그 옆에 존속하는 보통법상 예외가 없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위에 인용한 Goh, CBFL Working Paper, 2016년 12월 29일, 제II절 및 각주 12–14: 은행법은 1962년 처음 의회에 제출되었음(Singapore Parliamentary Debates, 1962년 1월 16일, 제15권); 1970년 법률 제41호, 1971년 1월 1일 시행; 그 사이에는 말라야 은행조례(Malayan Banking Ordinance)가 적용됨. 위에 인용한 Goh, CBFL Working Paper, 제II절 및 각주 28–29: 은행가의 비밀유지 의무는 전통적으로 은행법뿐 아니라 *Tournier v National Provincial and Union Bank of England* [1924] 1 KB 461에 따른 보통법에 의해서도 규율되는 것으로 여겨졌음. ↩

2. 위에 인용한 Goh, CBFL Working Paper, 제II절: "the old Section 47(1) which generally prohibited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from enquiring into the affairs of a customer"는 2001년에 교체되었음. ↩

3. 위에 인용한 Goh, CBFL Working Paper, 제II절, Singapore Parliamentary Debates 인용: "The banking secrecy provisions of the Banking Act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customer information. Tight banking secrecy is important to maintaining the confidence of customers in our banking system". ↩

4. Goh는 각주 3 및 15에서 이 성명을 Singapore Parliamentary Debates, 2002년 5월 16일, 제73권, 1689–1690단으로 인용함. ↩

5. 위에 인용한 Goh, CBFL Working Paper, 제II절: 2001년 정부는 재검토를 실시했고, "the erstwhile provisions under Section 47 of the Banking Act were completely repealed and replaced"; DataGuidance가 게재한 Banking Act (Cap 19), s 47 및 Third Schedule, 각 항에 입법 주기 [23/2001]가 붙어 있음. 2001년 법률 제23호로 개정된 Banking Act (Cap 19), s 47(1) 문언, DataGuidance 게재, "The Banking Act (Cap. 19), s 46, s 47, sch 3". ↩

6. 개정된 section 47은 2001년 7월 18일에 시행된 것으로 전해짐. ↩

7. 2001년 법률 제23호로 개정된 Banking Act (Cap 19), s 47(2)(위에 인용한 DataGuidance 문언). 2001년 법률 제23호로 개정된 Banking Act (Cap 19), Third Schedule, Part I("Further disclosure not prohibited"), 제1–9항, 및 Part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II("Further disclosure prohibited"), 제1항(위에 인용한 DataGuidance 문언). Banking Act (Cap 19), Third Schedule, Part I, 제8항 및 제3열, 조건 (a): "No deposit information shall be disclosed to the parent supervisory authority"; 그 당국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조건 (b)(위에 인용한 DataGuidance 문언). ↩

8. 2001년 법률 제23호로 개정된 Banking Act (Cap 19), s 47(6)(a) 및 (b)(위에 인용한 DataGuidance 문언). 2001년 법률 제23호로 개정된 Banking Act (Cap 19), s 47(3) 및 (4)(위에 인용한 DataGuidance 문언). ↩
9. 2001년 법률 제23호로 개정된 Banking Act (Cap 19), s 47(8)(위에 인용한 DataGuidance 문언). 2001년 법률 제23호로 개정된 Banking Act (Cap 19), s 47(9)(위에 인용한 DataGuidance 문언). ↩
10. *Susilawati v American Express Bank Ltd* [2009] SGCA 8, CA 140/2007, 2009년 2월 27일 선고(Chan Sek Keong 대법원장, Andrew Phang Boon Leong 판사, V K Rajah 판사; 판결 이유는 V K Rajah 판사가 작성): section 47은 "now the exclusive regime governing banking secrecy in Singapore"이며, *Tournier* 의 "no room for the four general common law exceptions"를 남김. 위에 인용한 Goh, CBFL Working Paper, 각주 9 및 30–32: *Susilawati v American Express Bank Ltd* [2009] 2 SLR(R) 737, [64]–[70]. 위에 인용한 Goh, CBFL Working Paper, 제II절 및 각주 33, Tan Yun Hui와 Poh Chu Chai의 비판을 인용하고 *Susilawati*의 해석을 옹호함. ↩
11. 위에 인용한 Goh, CBFL Working Paper, 제I–II절: 은행 비밀유지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은행에 대한 소송 전 증거개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증거법에 따른 은행장부 신청뿐임. ↩
12. Banking Act (Cap 19), Third Schedule, Part I, 제5항(위에 인용한 DataGuidance 문언). 위에 인용한 Goh, CBFL Working Paper, 제II절 및 각주 24: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Cap 190A)는 싱가포르 당국이 외국의 요청에 따라 형사사건의 수사와 증거 수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3. 위에 인용한 *Business Times*, 2010년 9월 24일, MAS 대변인 재클린 옹(Jacqueline Ong)의 발언 인용. ↩
14.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보도자료 "Singapore Endorses the OECD Standard for Exchange of Information", 2009년 3월 7일: 이 기준은 "is consistent with Singapore's system of banking confidentiality, which does not shelter criminals"; "does not preclude countries from having such confidentiality or privacy safeguards"; 싱가포르는 "a trusted centre for finance and a responsible jurisdiction". 위에 인용한 Goh, CBFL Working Paper, 각주 21은 같은 보도자료의 날짜를 2009년 3월 6일로 기재함. 2009년 3월 13일의 스위스 결정에 관하여는 Ressos,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partie E, chapitre III 참조. ↩
15.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재무장관의 실비아 림(Sylvia Lim) 의원에 대한 의회 답변, 2009년 5월 28일,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ingapore on the 'Grey List')": 싱가포르는 2009년 4월 초 이 목록에 올랐음; OECD는 "does not regard Singapore as a tax haven".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